

#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24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경, 김기덕, 김원태,  
김인제, 박승진, 성흠제,  
오금란, 유정희, 임만균,  
최재란, 한신 의원(11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와 자치구, 출연·출자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되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중복개최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 중복개최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이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문화행사 계획의 사전등록 및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 문화행사 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기관, 출연·출자기관, 자치구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 개최되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문화행사 관련 기관·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행사”란 서울특별시, 그 소속 기관, 출연·출자기관 또는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행사를 말한다.
2. “정보공유·협력체계”란 문화행사에 관한 일정, 장소, 주제, 예산 등 주요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상호 협의·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체계를 말한다.
3. “중복개최”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유사한 주제의 문화행사가 중복되어 예산·인력·관람객이 분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화행사에 적용한다.
-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자치구,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유와 협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행사의 사전 등록 및 정보공유를 권장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⑤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유 및 사전등록)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중복개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일정·주제 등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사업소, 출연·출자기관 및 자치구는 문화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행사 일정·장소·내용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등록·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공유 과정에서 중복개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등록·통보·협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협력 협의회) ① 시장은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 방향
2. 중복개최 예방 및 자원공유 활성화 방안
3.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자원공유 및 협력지원)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홍보자원 등을 기관 간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공유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공유 또는 공동행사 추진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공시설 대관 시 우선권 부여, 홍보 지원, 공모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중복개최 우려 행사를 협의하여 공동 또는 통합행사로 전환하는 경우, 시장은 기획·홍보·장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자원공유 및 협력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 성과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보공유 실적 및 이용 현황
2. 중복개최 감소 및 협력 사례의 성과
3. 자원공유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

#### 4. 민간단체 참여 및 시민 만족도

-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문화행사 관련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평가는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여부	판단 내용
1	제3조(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	[규정단일 미영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sup>1)</sup> 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제4조(정보공유 및 사전등록)	△	[시스템 특성상 추계 곤란] 정보공유 및 협의조정 촉진을 위한 비용 <sup>2)</sup> 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 특성상 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3	제5조(협력협의회)	○	[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 협의회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비용을 자체 추계함 ⇒ 총 38,165천원 소요예상 <sup>(연평균 7,633천원 소요)</sup>
4	제6조(자원공유 및 협력지원)	△	[현시점 추계곤란] 재정적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필요한 지원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워 구체적 추계가 곤란함
5	제7조(성과평가)	△	[현시점 추계곤란] 성과평가 위탁비용 <sup>3)</sup> 이 발생하나 현재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에 통상적인 사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합리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 그 외 규정의 경우 별도의 비용수반요소가 없을 것으로 보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문화행사 협력협의회 운영비(안 제5조)

- 1) [노력의무규정 특성]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가령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함
- 2) [공유정보 관리 특성 고려] 안 제2조제2호의 정보공유·협력체계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의·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통상 공유정보 관리업무 특성상 효율적 정보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규정에 의한 비용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3) [성과평가가 위탁가정] 성과평가의 경우 신뢰성 확보 등의 사유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례가 다수이며 이를 고려할 경우 해당규정에 의한 성과평가 실시 또한 위탁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가정함

#### 나. 전제

- (협의회) 서울시 통상적 위원회 운영방식 활용
  - (위원구성) 위원구성은 10인을 가정<sup>4)</sup>(공무원 2인 + 민간위원 8명)
  - (위원임기) 통상적 위원회 임기 등을 고려하여 2년 전제
  - (회의개최) 분기별 1회씩 연 4회<sup>5)</sup> 실시 가정
  - (소요항목) 참석수당 1인 200,000원, 업무추진경비 1인 30,000원, 위촉장 제작비 1인 5,500원 전제
- (발생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매년 소요,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예상
- (미고려) 향후 실제 사업추진 형태(현재 구체적 정책 미수립),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 라. 방법

- (자체추계) 서울시 통상적 위원회 운영비 등을 토대로 자체추계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38,165천원(연평균 7,633천원 × 5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협의회 운영 비용(안 제5조)	7,655	7,600	7,655	7,600	7,655	38,165
	소계(a)	7,655	7,600	7,655	7,600	7,655	38,165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7,655	7,600	7,655	7,600	7,655	38,165

### 4.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예시적·제안적 금액

- 입법취지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해당 안은 선제적 입법<sup>6)</sup>이므로 구체적 정책수단, 집행 계획 등이 정해진 바 없어 서울시 유사 위원회 운영비용 및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과에서 정책 추진형태를 임의로 가정하여 자체추계하였음

- [추계액 활용유의] 대략적 규모파악용 자료로 활용권장

-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민간위원 수, 위원구성, 회의개최 주기 등 (다양한 지출결정요인)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협의회 최대구성 가정]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 최대구성인 10인과 협의회 기능을 고려하여 서울시 문화 관련부서의 장(공무원) 1명, 서울시 예산 관련부서의 장(공무원) 1명 및 전문가 등(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총10명을 임의가정함

5) [서울시 위원회 관련 조례 고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제2항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가정

6) [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입법조치이나,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문화행사 협력협의회 운영비(안 제5조)

###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총 38,165천원(연평균 7,633천원 × 5년)

나. 연도별 소요비용 = (① 참석수당 비용 + ② 업무추진경비 + ③ 위촉장 제작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위원회 운영비용		7,655	7,600	7,655	7,600	7,655	38,165

① 참석수당 비용 = 6,400천원

$$= \text{수당단가}(P) \times \text{지급인원}(Q) \times \text{연4회}(T)$$

$$= 200\text{천원}^7) \times 8\text{명}^8) \times 4\text{회}$$

② 업무추진경비 = 1,200천원

$$= \text{경비단가}(P) \times \text{지급인원}(Q) \times \text{연4회}(T)$$

$$= 30\text{천원}^9) \times 10\text{명} \times 4\text{회}$$

③ 위촉장 제작비 = 55천원

$$= \text{제작비용}(P) \times \text{인원}(Q)$$

$$= 5,500\text{원}^{10}) \times 10\text{명}$$

7)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 위원회 참석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8)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제2항에 따라 공무원(당연직 등)을 제외한 민간위원 8명에게 지급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최근 50천원으로 변경(2024. 8. 27.개정) 되었으나 통상적인 업무추진 예산을 고려하여 30천원으로 적용

10) 통상적인 서울시 위촉장 제작비용 준용 / 위촉위원 임기에 따라 2년마다 발생 가정(전원지급 전제)